

스토킹,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의 내용과 쟁점

2022.2.22.

김정혜 (wiccee@gmail.com)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친밀한 파트너

[intimate partner]

성별,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범행 시점의 법적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긴밀한 개인적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

친밀한 파트너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 통제 행동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젠더에 기반한 폭력, 젠더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폭력철폐선언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여성에 대하여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젠더에 기반한 여하한 폭력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억압, 자유의 자의적 박탈을 포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데이트폭력 정의

데이트폭력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

데이트관계

연애 목적 만남, 과거 애인, 소개팅, 채팅, 썸, 일방적인 관계 등 다양함

한국여성의전화 안녕데이트공작소

♡ssay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전국공정연애실력고사

데이트UP데이트

진상애인열전

진상애인열전사례



그냥 짐승 애인 '참을 수 없어'

Q. 애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내가 먼저 키스하기도 하고, 전보다 스킨십에 대해 마음이 열리긴 했지만, 성관계를 할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어. 근데 애인은 "날 사랑하지 않아?", "막상 해보면 너도 좋아할 거야", "이..."

Views 917



파파라치 애인 '우리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

Q. 너희를 흑시 애인이랑 성관계 영상 찍은 적 있니? 사실 애인이 요새 성관계를 할 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대서 너무 힘들어. 사건 초반부터 좀 문제가 있던 것어. 속옷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도 출라서 한두 번 보내준 적은 있었거든... 그리고 얼...

Views 443



외모 지적하는 심사위원 애인 '살 좀 빼'

Q. 나 많이 뚱뚱해? 애인이 자주 외모 가지고 구박해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밥 먹을 때마다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너 정말 잘 먹는 다"고 비교고 구박한다니까. 뚱뚱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싶...

Views 584



콘돔 거부하는 막가파 애인 '다 내가 책임질게'

Q. 나는 이성커플인데, 애인이 피임을 안 해서 고민이야. 콘돔을 끼면 느낌이 안 온다고 싫어하고, 질외사정 하면 된다면 밀어붙이는 식이야. 그렇지만 질외사정은 피임법이 아니잖아. 피임약도 먹어봤는데, 약이 몸에 안 맞는지 머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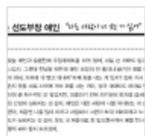
Views 726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CCTV 애인 '나만 바라봐'

Q. 회사에서 신입이라 여러 가지로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인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애인 전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번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전화를 꺼 놓았더니, 그 사이에 부재전화가 50통이나 온 거 있지? 무슨 일 생겼나 싶어 놀라서 전화했...

Views 307



복장 단속하는 선도부장 애인 '다른사람이 너 보는 거 싫어'

Q. 오늘 애인과 오랜만에 주말데이트를 하게 됐어. 새로 산 치마도 입고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지. 그런데 만났을 때부터 애인 표정이 안 좋더니 급기야 화를 내는 거야. "웃이 그게 뭐냐며, 차라리 다 벗고 다니라"며 화를 내는 거 있지? 집에...

Views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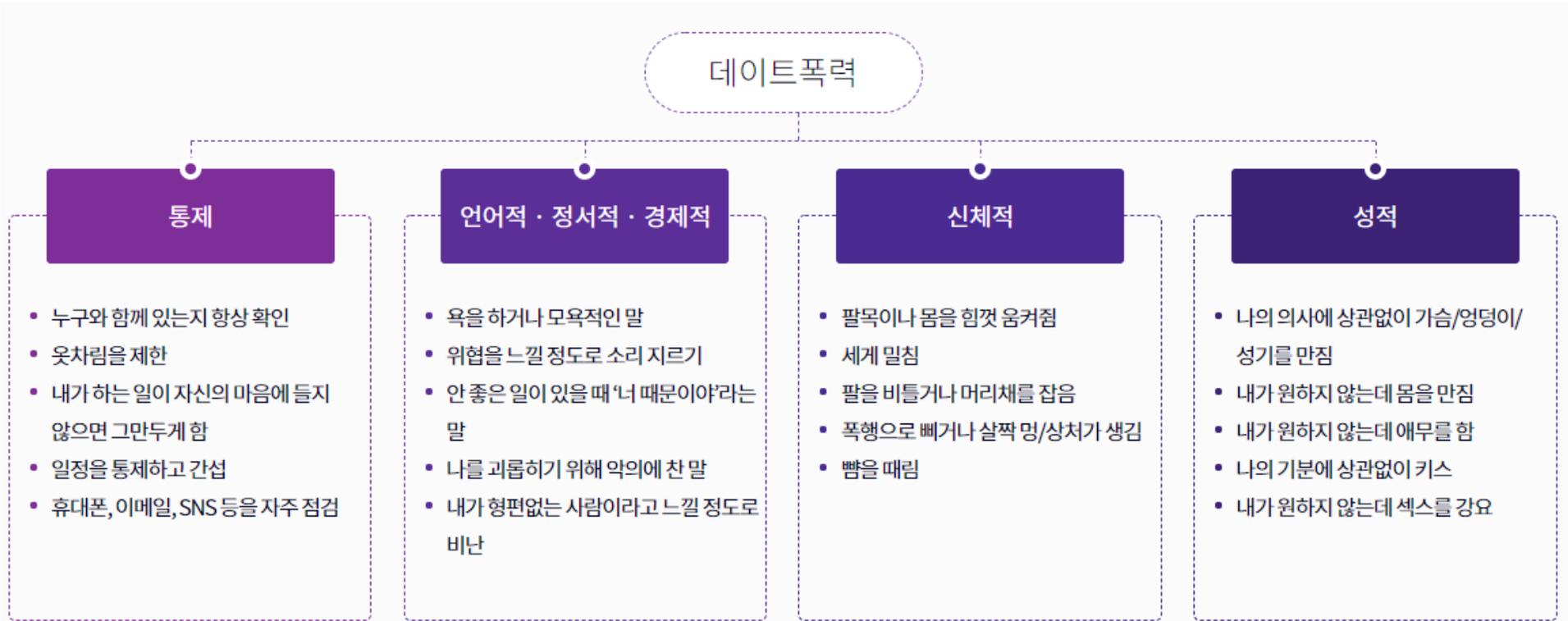


찌질마초 애인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Q. 연애하던 다른 인간관계도 유용도 다 접어야 하는 거야? 술을 과하게 마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바람피우는 것도 아닌데, 애인이 술 먹거나 클럽 가지 말라고 난리야. 저번에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클럽 갔었잖아. 싫어하는 거 아니까 가기 전에 미...

Views 404

데이트폭력 유형



데이트폭력 인식

내용	참고	여성	남성
연인들이 호텔이나 모텔에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완전히 동의 4점	2.15	2.45
연인들이 1박 이상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		1.77	2.10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는 편이 낫다	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	22.0	30.0

데이트폭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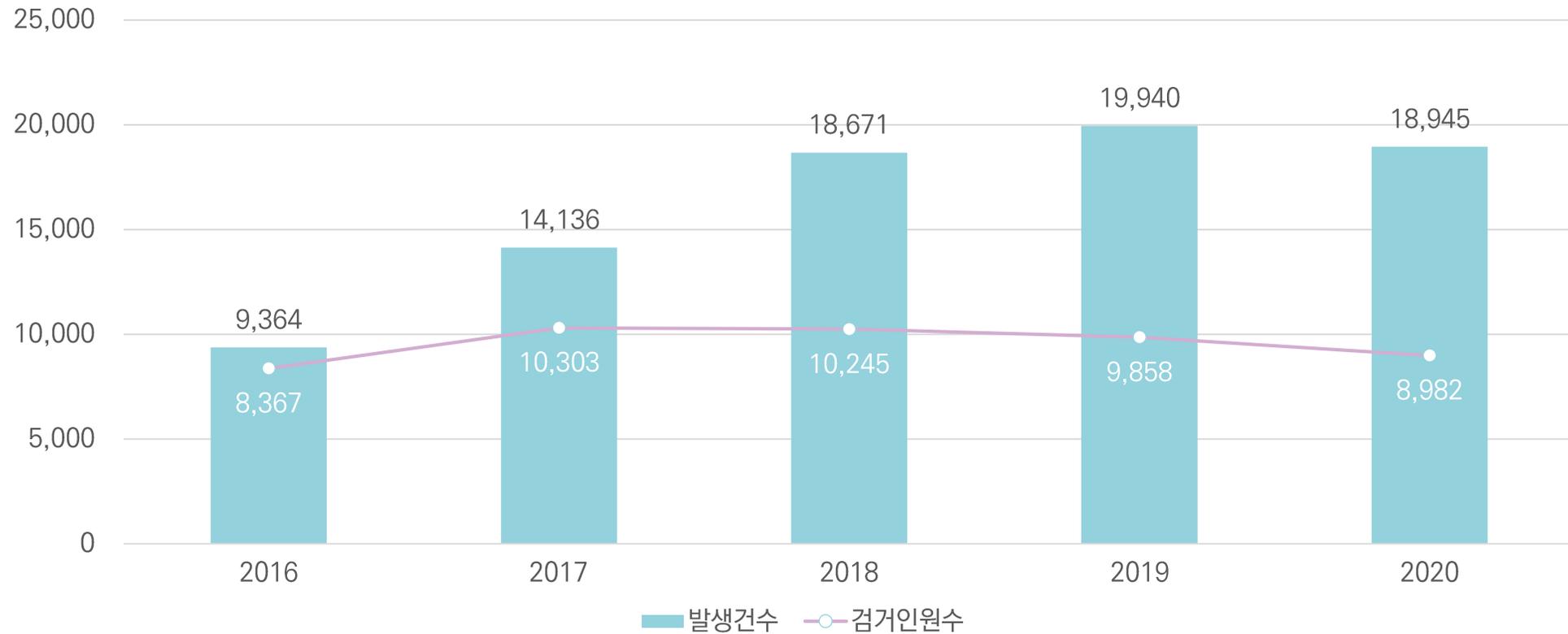
[데이트폭력이 시작된 시기]

(단위: %)

문항	통제	언어적/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사귀기전	4.8	4.0	2.6	4.2
사권 후 1개월 미만	30.5	18.3	11.1	21.4
사권 후 1개월-3개월 미만	26.2	21.4	15.3	26.5
사권 후 3개월-6개월 미만	11.5	18.0	21.2	15.8
사권 후 6개월-1년 미만	9.5	15.5	22.2	15.0
사권 후 1년-2년 미만	4.1	10.0	13.2	8.8
사권 후 2년-3년 미만	1.8	2.5	4.8	1.6
사권 후 3년 이상	0.6	2.5	1.6	2.0
헤어지자고 한 이후	0.6	2.5	2.6	0.2
기억나지 않음	10.3	5.1	5.3	3.4

데이트폭력 현황

[데이트폭력 신고 및 검거]



데이트폭력 현황

[데이트폭력 범죄유형별 신고 건수]



데이트폭력 현황

[2020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관계별)]

(단위: 명)

범죄유형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계
	배우자관계	데이트관계	기타	친밀관계 소계	주변인	
살인	45	48	4	97	18	115
살인미수 등	50	77	4	131	39	170
계	95	125	8	228	57	285

- 배우자관계: 전, 현 법률혼, 사실혼 배우자 포함
- 데이트관계: 전, 현 데이트관계, 동거, 소개팅, 채팅, 조건만남 등 포함
- 기타: 배우자나 데이트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데이트폭력 특성

- 폭력이 사랑으로 정당화
- 지속성
- 폭력 피해임을 인정받거나 신뢰받기 어려움
- 피해자비난
- 이별하려고 할 때 더 고조되는 특성
- 스토킹과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 그러나 연인 관계가 유지될 때에도 발생

데이트폭력 대응 정부 대책

- 데이트폭력 사건처리 기준 마련
-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TF 가동,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경찰관 직무교육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 제공
-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연계할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긴급피난처에서 최대 30일까지 보호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함
-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실시
- 데이트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운영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 마련, 상담소 등에 배포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포함

데이트폭력 ↔ 가정폭력의 법적 대응

공통점

친밀한 파트너 관계

관계 특성으로 인한 피해 인정의 어려움

관계 특성으로 피해의 사소화

형사처벌 외 가해자 제한 조치 필요성

차이점

관계 증명, 판단 기준

관계의 다양성 정도

거주, 경제적 결합의 정도

가정폭력, 스토킹범죄에서 제한 조치

- (긴급)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제한 조치
 - 서면경고
 - 피해자,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의료기관,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형벌과 재범방지 수강명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병과 가능

데이트폭력 ← 가정폭력,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 반의사불벌
- 피해자 의사 존중 의무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에서 택일

친밀관계폭력으로서의 스토킹

- 젠더폭력의 일환으로서의 스토킹
-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스토킹의 사소화
- 영향, 효과에서 다른 젠더폭력 경험과의 종합적 평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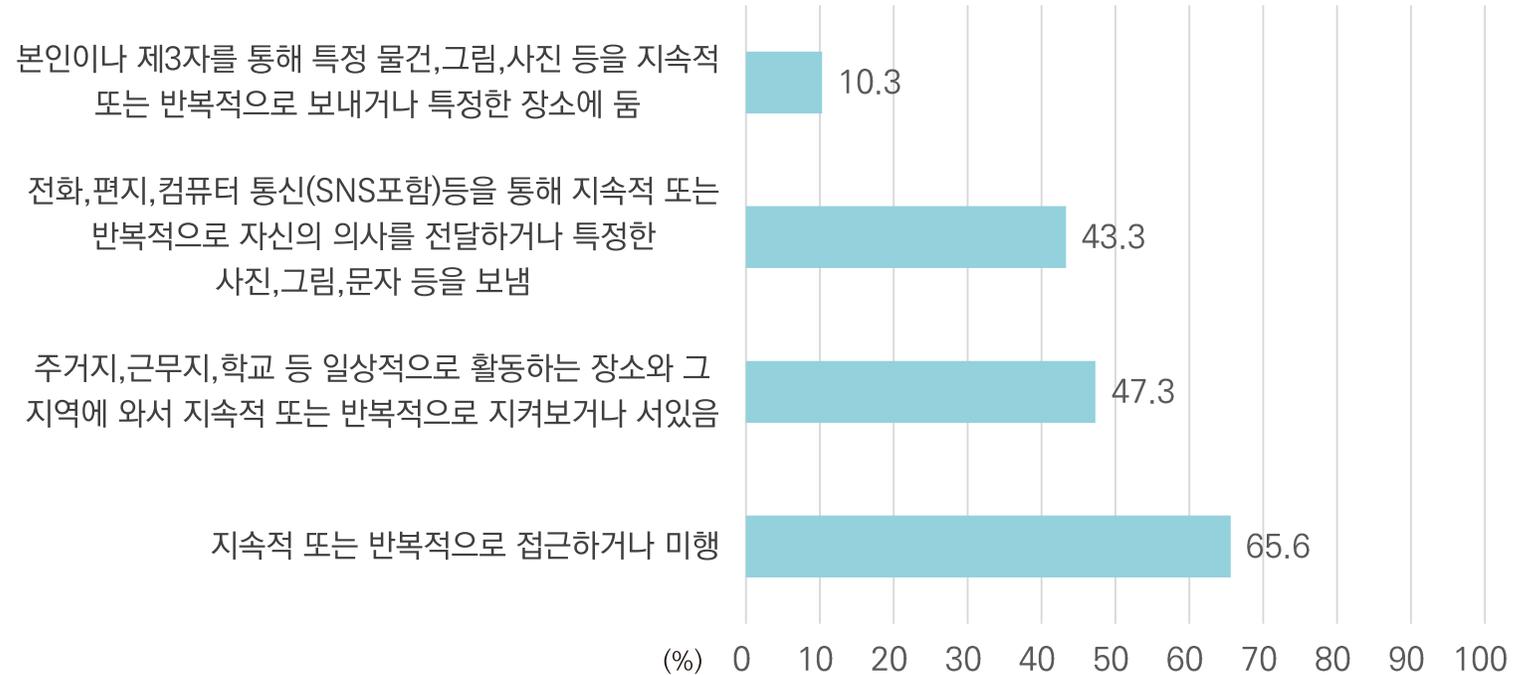
스토킹 유형

집착, 관심 끌기,

보복, 요구의 관철,

강압적 통제, 사회적 규범의 강요...

[피해 유형 상위 4개(여성)]



스토킹 정의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톱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정의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여

상대방의 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일련의 행위

스토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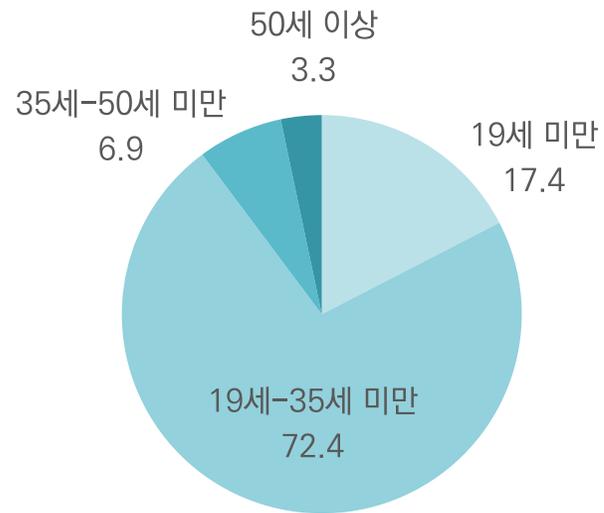
[스토킹 피해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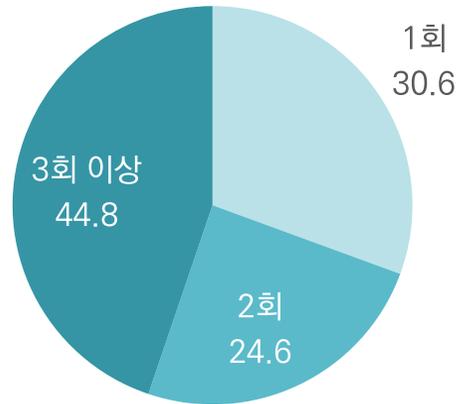
년도	지난 1년		평생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	1.0	0.2	6.1	3.1
2013	0.5	0.0	2.9	0.6
2016	0.3	0.0	1.5	0.3

스토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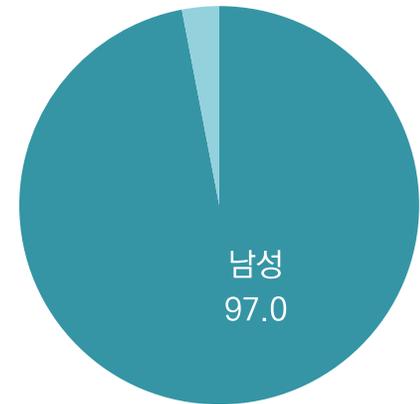
[스토킹 피해 경험(여성)]



최초 피해 연령



피해 횟수



가해자 성별

스토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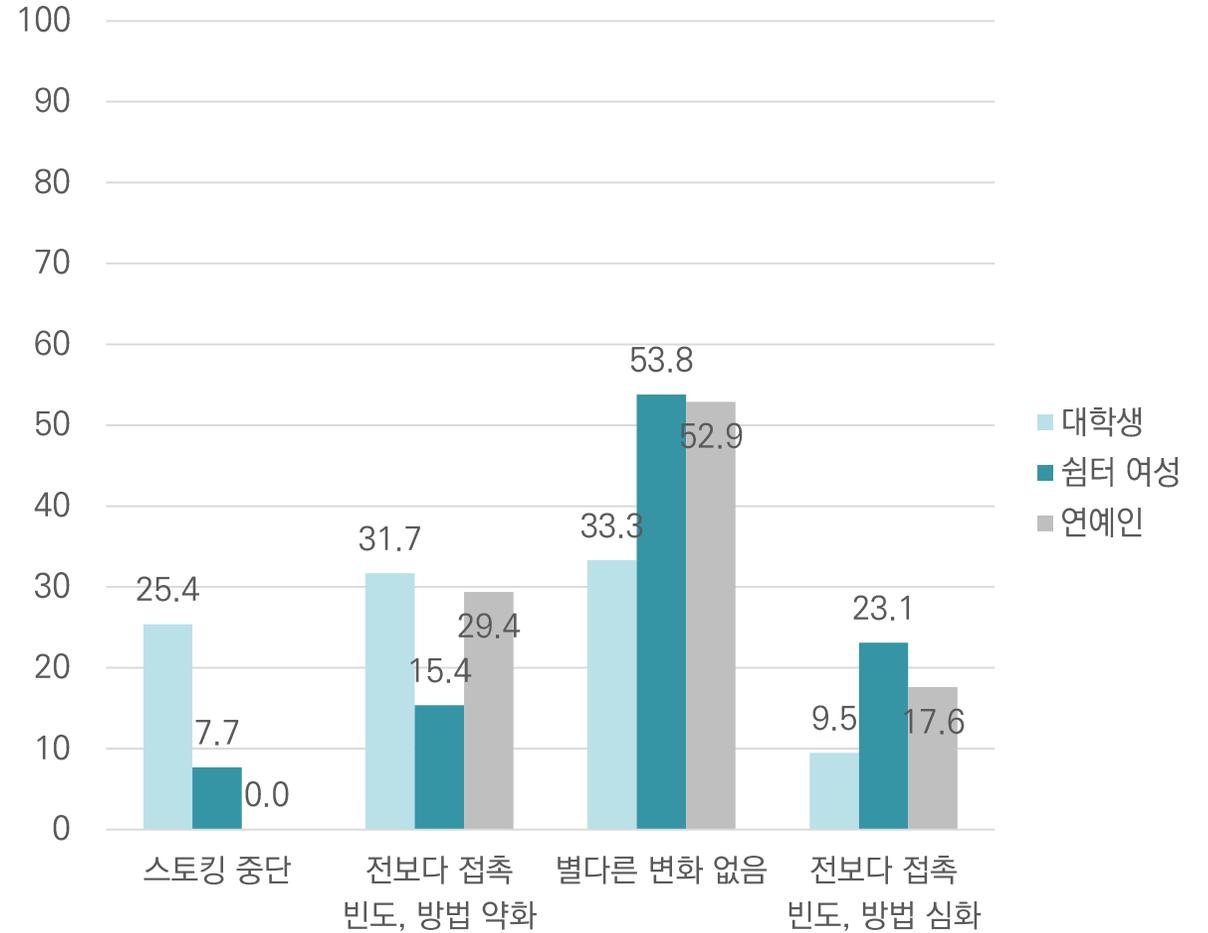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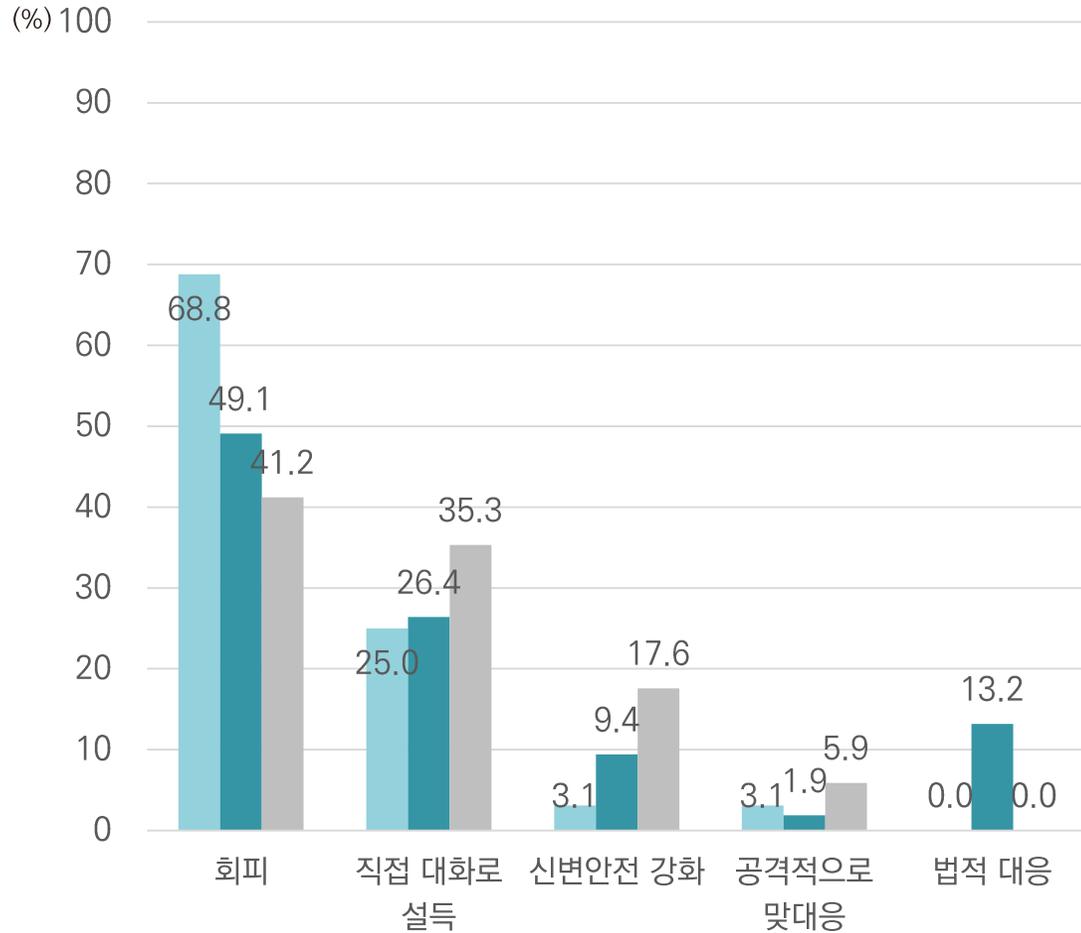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상담 가해자 특성]

(단위: 명, %)

년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계
	연인	과거 연인	연인 외 관계	배우자	과거 배우자	배우자 외 관계	친구/선후배	학교 관계자	직장 관계자	서비스제공자	온라인으로 알게된 사람	동네 사람	관계자의 지인	기타		
인원수	28	358	28	0	18	6	41	2	75	21	56	131	25	204	178	1,171
비율	2.4	30.6	2.4	0.0	1.5	0.5	3.5	0.2	6.4	1.8	4.8	11.2	2.1	17.4	1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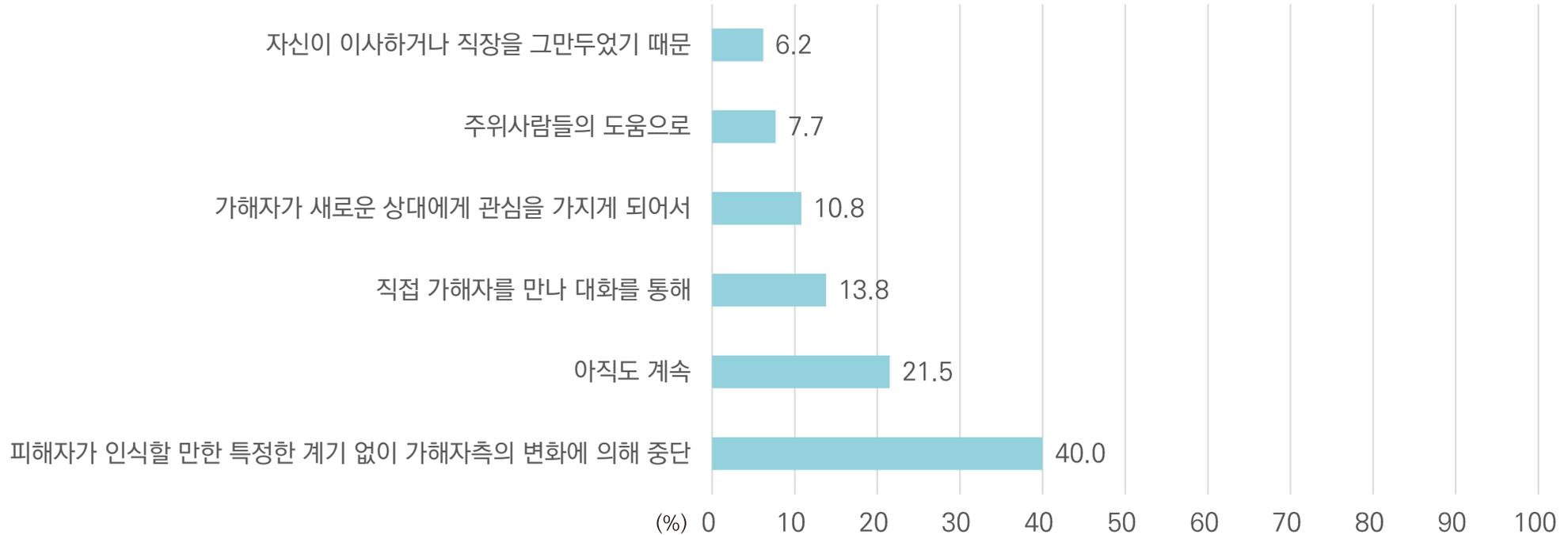
스토킹 현황

[피해자의 주된 대응과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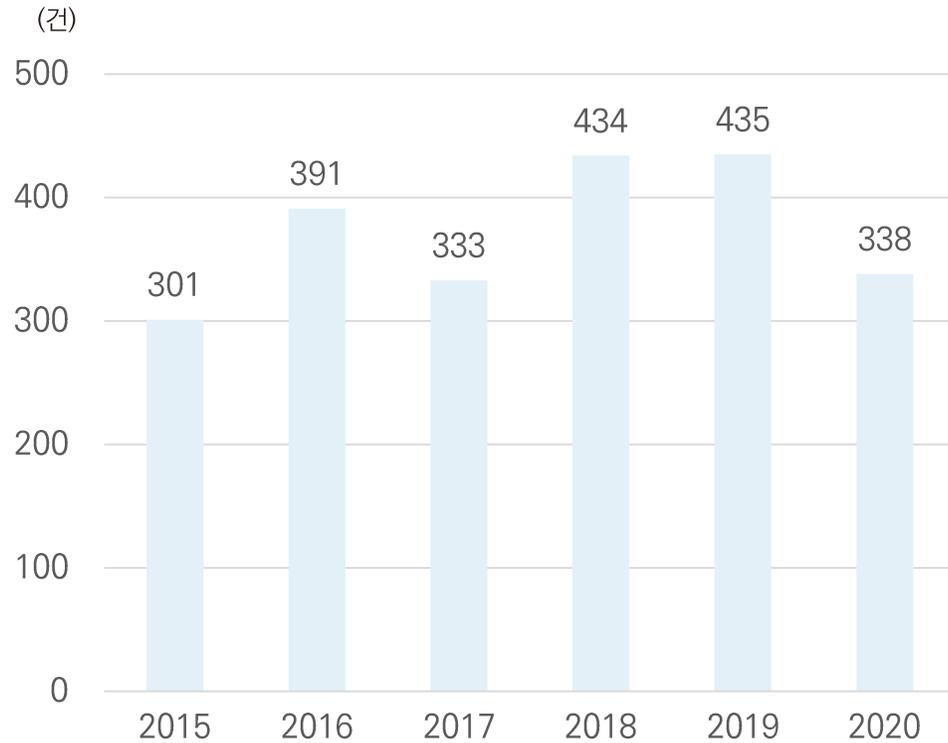
스토킹 현황

[스토킹이 멈추게 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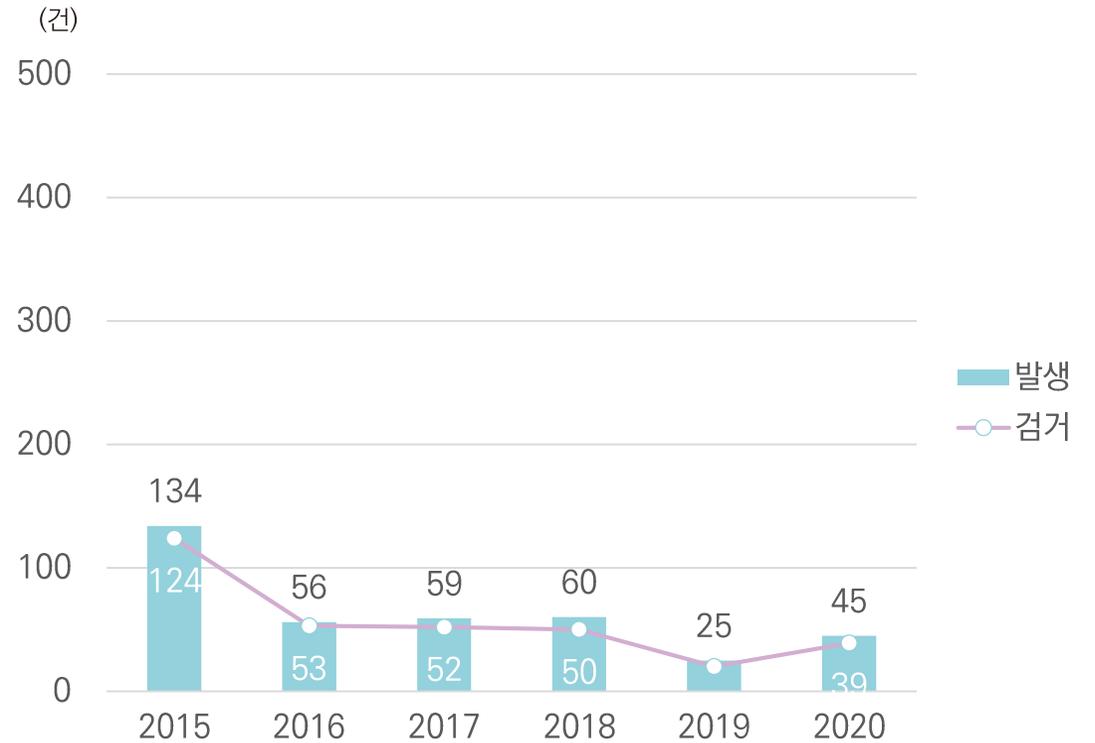
스토킹 현황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경범죄 신고처분]



-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

[사이버스토킹 발생 및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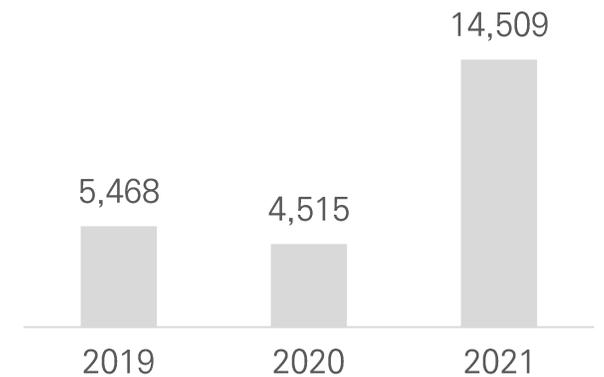
- 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

스토킹 현황

[경찰의 월별 스토킹 112 신고 접수]

(단위: 건)

년/월	2019	2020	2021											계
			1	2	3	4	5	6	7	8	9	10.1~ 10.20.	10.21~ 12.31.	
건	5,468	4,515	357	259	341	632	877	1,016	950	810	817	912	7,538	14,509



스토킹 특성

- 친밀관계에서 많이 나타남
- 이별폭력의 일종으로 나타나기도 함
- 장기간 지속,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 다양한 방법을 사용
- 각각의 행위들을 별개로 보면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와 제3자가 보는 피해의 간극
- 사소해 보이는 행위를 방치했다가 강도가 높아질 수 있음

스토킹의 법적 처벌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다른 경범죄들: 호객행위,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구걸, 음주소란, 무임승차 등

[스토킹 외 형법상 범죄]

- 협박, 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상해 등 스토킹에 수반된 범죄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 외 가해자 제재조치 부재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 보호 조치
- 2021.10.21. 시행

스토킹 대응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정의]

-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 피해자: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등: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스토킹 대응

[스토킹 처벌]

-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능)
- 흥기,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이용하여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벌과 수강명령, 이수명령 병과 가능

스토킹 대응

[가해자 제재 조치]

응급조치

-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실시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의 조치
- 스토킹행위가 지속, 반복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잠정조치

- 법원의 조치
-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대응

[가해자 제재 조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상담소,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

스토킹 대응

[가해자 제재 조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최대 1개월
- 사후승인 못 받은 경우 즉시 취소

- 사법경찰관의 조치 → 지체없이 검사에 보고 → 검사는 48시간 내에 지방법원에 사후승인 청구
- 스토킹행위가 지속, 반복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위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스토킹 대응

[가해자 제재 조치]

응급조치

- 법원의 조치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병과 가능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통해서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 검사에게 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불기소처분, 불송치결정 시 잠정조치 효력 상실
- 접근금지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에 대한 이해



HOME > 사회 > 사회일반

헤어진 여친 집앞에 꽃 놔두고 기다려도 '스토킹'

발행일 2021-11-24 17:05:49 | 댓글 0 | + -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대구 신고 3배 증가
법 시행 전 일평균 신고건수 0.9건...시행 후 3.2건

인사이트

앞으로 '충간소음' 항의 쪽지 붙였다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재유 기자 · jaeyou@insight.co.kr

입력 : 2021.10.14 10:02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충간 소음, 공공주택 내 흡연 등 이웃 간 갈등으로 항의 쪽지를 남기거나 아랫집에서 뒷집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성적 등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

- 스토킹의 의미가 아닌, 구체적 사례 중심의 안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서도 반복되는 문제들
- '협박'의 요구, '로맨스의 처벌', '사적 영역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인상을 줌
→ 개별 행위마다 협박 요구해서는 안 됨, 일련의 행위, 여러 행위의 총합으로서 완성되는 스토킹의 속성 해석이 우선되어야 함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부 대책

[2018~2021]

- 스토킹 예방교육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이주여성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주여성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실시하도록 함: 기존 폭력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스토킹도 지원
- 스토킹 피해자를 연계할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긴급피난처에서 최대 30일까지 보호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에 스토킹 피해자 포함
-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실시
-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운영
-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에 스토킹 피해자 포함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 마련, 상담소 등에 배포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포함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한계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이용하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

- 법무부 및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이용의 한계
 - 범죄 개념에 포함되어야 지원 가능: 스토킹의 정의가 협소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위험,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범죄 성립 여부 판단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미 지적되고 있음
 - 강력범죄 피해자 중심의 지원, 지원 내용에 따라 일시적이고 긴급한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
-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이용의 한계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구분된 지원 체계에서 발생하는 한계
 - 젠더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가정폭력, 성폭력과 무관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
 - 스토킹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지원자의 신변 안전 확보 필요성이 더 높은 데 대한 대책 필요
 - 스토킹 피해 지원의 전문성 필요
 -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 확보, 정책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확히 할 필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스톱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1. 스톱킹 신고체계 구축·운영
 2. 스톱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신변 관련 정보 보호 등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5. 스톱킹 피해자 지원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6.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7.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8. 스톱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1~8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예산상의 조치
-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소극적, 방어적인 피해 방지·회복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활상의 평온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함
 - 피해자의 신변보호 관련 조치, 일상 필수 활동 동행, 일시보호, 주거이전비 지원, 피해자의 생활공간의 보안 강화를 위한 도구의 지원 또는 구입설치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스토킹의 수사, 재판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 실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톱킹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스톱킹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스톱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스톱킹피해자지원센터 내에 설치
 - 보호시설은 경찰서 인근에 설치,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 등 통해 입소자의 신변보호 강화
 - 중장기적으로 스톱킹 피해자 지원 전담 민간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지원체계 확대 가능
 - 스톱킹피해자지원센터는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스톱킹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서 스톱킹 피해 사례를 이해하고 지원 계획 수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에서 스톱킹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
 - 스톱킹피해자지원센터를 대체하려는 것 아님. 가정폭력, 성폭력에 스톱킹이 수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 스토키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1. 스토키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키 위험성 평가와 안전 계획의 수립
 3.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 지원
 4.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5.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6.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7. 스토키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8. 스토키 예방을 위한 홍보
 9. 스토키 및 스토키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 **취학 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또한 확대가 필요한 영역)
 - 스톱킹 피해자나 피해자가 보호 또는 양육하는 사람이 미성년이거나 초·중·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
 - 절차 등은 성폭력방지법 준용. 향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정비를 통해 관련 법률들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준용하는 방식으로 통일성 확보 필요
 - 가족구성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양육 관계에 있는 경우 적용하도록 함
- **취업 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또한 확대가 필요한 영역)
 - 스톱킹 피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으로 취업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등 지원
 - 스톱킹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회복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으로 인하여 취업 지원이 필요하게 된 사람을 포괄하도록 함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 생계 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또한 확대가 필요한 영역)
 - 스토킹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
 - 피해자의 생계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의무 명시
 -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피해자의 **실질적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명시: 피해자의 자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을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경우,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곤란에 처해 있거나 수급비를 스토킹 가해자 등이 가로채어 피해자가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방지
- 법률 지원
 -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법적 근거 명시
- 주거 지원
- 의료 지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 정보의 삭제 지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가 스토킹피해와 관련된 것일 때 국가가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44조의2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 요청 가능

- 스토킹 피해자도 직접 삭제 요청 가능하지만 개인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널리 퍼진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 피해의 연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둘 필요
-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스토킹범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

[스토킹행위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나, 다, 라, 마…

- 구성요건의 중복, 복잡성
- 스톱킹 행위 상대방의 범위: 동거, 가족이라는 형식적 관계로 제한
- 스톱킹 행위자의 범위: 제3자를 통한 행위의 누락 가능성
- 나열된 행위 5종류에 한정: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도달’하는 행위 중심
- 다수의 다수에 대한 일상적이고 다양한 행위의 총합으로서의 스톱킹 이해는 가능한가? 개별 상황들로 파편화되어 사소화될 위험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포섭하기 어려워보이는 행위 예시]

- 가해자의 SNS에 피해자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상태메시지 등에 올리는 행위
- 온라인·모바일 공간에 피해자와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거나 링크를 포함한 연결수단을 부여하는 행위
- CCTV, IP 카메라, 스마트기기,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기록장치, 스마트 스피커 등 음성인식장치, GPS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고 위치 등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와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허락 없이 열어보고 기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기에 연결된 계정에 기록된 정보를 훔쳐보거나 피해자인 척하면서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
-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기기를 허락 없이 열어보고 추적 가능하도록 앱을 설치하거나 보안 수준을 낮추거나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메시지, 메모 등의 콘텐츠나 앱을 삭제하거나 피해자가 사용하기 어렵게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포섭하기 어려워보이는 행위 예시]

- 실제로 감시나 추적을 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감시 또는 추적당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이메일이나 계정 등을 해킹하거나 온라인·모바일 공간에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결혼/연애상태, 학력, 경력, 사진 등등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여 계정을 만들거나 프로필을 올리거나 글 등을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피해자와 관련된 글이나 그림을 남기거나(그라피티) 음향, 영상 등을 재생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포섭하기 어려워보이는 행위 예시]

- 피해자나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의사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 반려동물 등 피해자가 돌보는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동물학대 행위. 반려동물 등 피해자가 돌보는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의 장래의 안전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게 하는 행위
-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피해자의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을 데려가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

[스토킹 정의 개정안]

1. “스토킹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라.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바.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시 또는 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사.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 아.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자.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사진, 영상, 그림,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를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 차. 반려동물 등 상대방이 돌보는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동물학대 행위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

[스토킹 정의 제안]

- 스톱킹처벌법의 스톱킹의 정의가 좁아, 향후 제정될 피해자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지원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피해자 보호에서는 스톱킹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스톱킹처벌법의 정의보다 폭넓은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 가정폭력처벌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이 취하고 있는 방식임

제0조(정의) 1. “스토킹”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

- 불기소처분, 불송치결정으로 자동 효력 상실 조항 삭제
 - 입증이 곤란했지만 스토킹 지속 위험이 있는 경우, 행위의 경미함을 이유로 불기소, 불송치하게 된 경우 등 잠정조치 지속 필요한 사례에서도 피해자 보호 공백 발생
- 형벌과 접근금지 등 조치의 병과
 -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이 낮아 실형 선고(인신구속) 가능성도 낮고, 재판 이후에도 스토킹 지속 가능성 있음
- 피해자 신변 보호, 정보 보호 명시
- 가해자 신변 변동 관련 정보 제공 명시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조치 변경, 구속 여부, 수사 및 재판 결과 등 정보 제공 의무화
 - 피해자들의 안전감 회복, 안전 확보 위한 조치가 가능해짐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

- 피해자국선변호사(법무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지원 조치 도입: 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치 참고
-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치료'가 필요한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

- 다양한 행위들의 종합적 판단 원칙 명확히 할 필요
- 가해자 제재 조치의 다양화
 - 접근형 스톱킹 중심으로 구성된 조치들의 한계
 - 오프라인 기반의 현행법 신고 모델: '진행중인' 스톱킹행위의 '신고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
- 접근금지 대상 확대: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 가해자 제재 조치 위반 시의 실질적 제재 수단 확보
-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도입: 경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 청구할 수 있도록
 -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시 유치명령 포함
- 반의사불벌 삭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스토킹 피해자 고용 보호]

- 사용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인사조치, 차별, 괴롭힘 및 기타 조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2차 피해', 성폭력방지법 등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 유형 참조)
 - 근로계약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신고인 또는 피해자인 경우 포함
 - 위반 시 처벌
- 행위자 제한 없이 불이익 금지 의무
 - 행정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조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2차 피해' 유형 참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스토킹 피해자 고용 보호]

- 스톱킹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해, 사건처리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등 피해자가 스톱킹과 관련된 이유로 시간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할 의무 부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또한 확대가 필요한 영역)
 -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신체적, 정신적 치료, 거주지 이전 등
- 스톱킹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 연락처 변경,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또한 확대가 필요한 영역)
 - 근로계약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포함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스토킹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자격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 ‘피해’ 우려 있는 사람에 스톱킹범죄 피해자 포함하여 개정 필요
-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 필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스토킹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 주민등록표 열람,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자격
 - 본인, 세대원, 위임 받은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가족
- 가정폭력 피해자의 열람 등 제한 신청
 -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지를 달리 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열람 등을 제한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톱킹 피해자에 스톱킹 가해자의 열람 등 제한 신청 자격 부여 필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방향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톱킹 피해자 보호]

- 가정구성원 간 스톱킹범죄를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폭력범죄에 포함
 -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적용 가능: 자녀 보호조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등
 - 직계존속 고소 가능
 - 주민등록법 등 타 법률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가능
- 단, 가정폭력처벌법 자체의 한계가 스톱킹 처벌 약화시킬 우려
 -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용 위험이 있음
-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직계존속 고소 예외 특례 등을 스톱킹처벌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스토킹 대응

- 현행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처벌의 가능성 활용해야
- 법 시행 초기 대응이 중요. 대응 미약하고 기대 낮아지면 사문화 위험
- 스토킹의 정의 개정 전에도 피해자 상담, 지원은 법적 정의의 한계에 갇히지 않아야 함
-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스토킹범죄의 수사 진행, 잠정조치 활용 필요
- 일련의 행위로서의 스토킹 범죄 이해 강조
 - 스토킹은 범죄의 총합이 아님. 여러 행위를 종합하여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요
 -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는 사례, 장기간에 걸쳐 띄엄띄엄 반복되는 사례, 개별 행위들은 경미해보이고 협박을 포함하지 않는 사례 등이 스토킹 개념에서 무조건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 한 번의 행위의 지속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